

5.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

법무실장 : 강인구 ☎3410-7913 송무부장 : 강기언 ☎7920 담당 : 이가은 ☎7922

재무관리처장 : 조미숙 ☎3410-7050 원가관리부장 : 박한진 ☎7129 담당 : 김재운 ☎7124

재정관리부장 : 이준철 ☎7037 담당 : 김민규 ☎7040

자산관리처장 : 한상균 ☎3410-7331 자산관리부장 : 조남식 ☎7129 담당 : 황영선 ☎7187

주거환경개선처장 : 손오성 ☎6940-8622 빈집사업부장 : 박준석 ☎8623 담당 : 최종욱 ☎8626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사 정관의 해당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시의회에 보고함.

I

관련근거

○ 조례개정

-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(조항신설)
-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3조의2(조항신설)

○ 추진현황

- '23.10.04. :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
- '23.11.23. : 서울주택도시공사 제393회 이사회 정관 개정안 원안 의결

II

추진경위

○ 정관개정 관련

- '23.10.04.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
- '23.11.16.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 수립
- '23.11.23. 제393회 이사회 개최
 - ▶ 「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」 개정(안) 원안의결

Ⅲ 주요 개정 내용

□ **현행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(이하, 조례)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사 정관의 해당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유지**

○ 사업의 범위(제6조 제1항) 제21호 신설

- 조례 개정(23.10.4.)으로 ‘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’ 이 공사 사업수행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내용을 공사 정관에 반영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[시행2023.10. 4.]
제21조(사업)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~ 20. (생략) 21.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<신설 2023.10.4.>

□ **조례의 투명경영 구현을 위한 분양원가 등 공개 조항 신설에 따른 정관 위임 사항 규정**

○ 조례 제43조의2(투명경영을 위한 공개) 조항 신설

- 현행 정관에 제34조의3을 신설하여 조례 제43조의2 제2항 위임 사항을 규정함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[시행 2023.10.04.]
제43조의2(투명경영을 위한 공개) ① 공사는 투명경영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 후 공개할 수 있다. 1. 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2. 공사가 소유한 자산현황 3. 공사가 시행한 주요 개발사업 결과 4. 그 밖에 사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공개항목, 시기,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.
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(현행)
<신설>

□ 주요골자

- 정관 제6조 제1항 제21호를 조례 제21조 제1항 제21호 내용으로 신설
- 투명경영을 위한 공개 세부 조항(정관 제34조의3) **신설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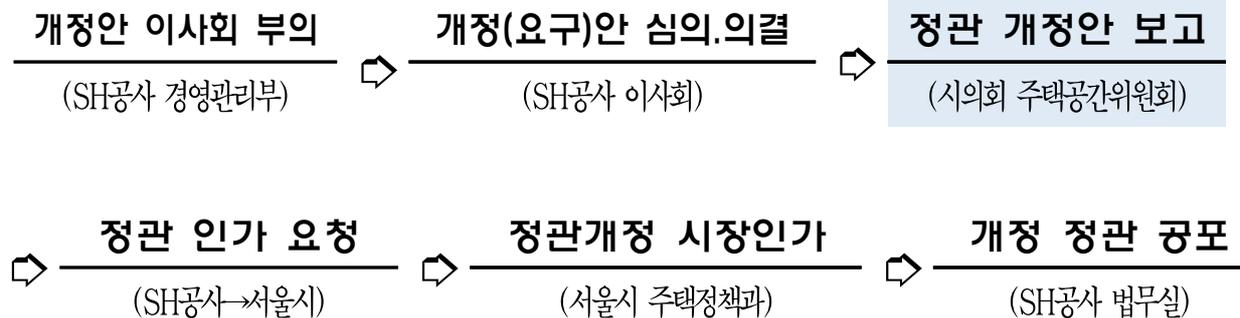
구 분	주요사항	관련조례
공사 공급 공동주택의 분양원가	-공개항목: 택지조성원가, 주택건설원가 -시 기: 주택건설공사 준공 후 -방 법: 공사홈페이지	제43조의2 제1항 제1호
공사가 소유한 자산현황	-공개항목: 자산유형별 취득가격 등 -시 기: 매년 -방 법: 공사홈페이지	제43조의2 제1항 제2호
공사가 시행한 주요 개발사업 결과	-공개항목: 주요 개발사업 결과 -시 기: 사업 준공 후 -방 법: 공사홈페이지	제43조의2 제1항 제3호

IV

향후계획

- '23.12. : 정관 인가요청(SH공사 → 서울시)
- '23.12. : 정관개정 시장인가(서울시)
- '23.12. : 개정 정관 공포(SH공사)

[정관 개정절차]



[붙임 1]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6조(사업의 범위)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20. (생략)</p> <p>〈신 설〉</p> <p>21.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</p>	<p>제6조(사업의 범위)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20. (현행과 같음)</p> <p>21.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</p> <p>22.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</p>	
<p>〈신 설〉</p>	<p>제34조의3(투명경영을 위한 공개)</p> <p>① 공사가 조례 제43조의2에 따라 공개하는 사항의 공개 항목,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공동주택 분양원가는 택지조성원가와 주택건설원가로 구분하여 공개하되 주택건설공사 준공 후 공개한다.</p> <p>2. 자산현황은 임대주택, 상가 등 자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취득가격 등을 매년 공개한다.</p> <p>3. 주요 개발사업 결과는 사업 준공 후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와 대비하여 공개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공개는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.</p> <p>③ 제1항의 공개항목과 제2항의 공개 방법은 늘릴 수 있고, 제1항의 시기는 앞당길 수 있다.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사 사규로 정한다.</p>	
<p>〈신 설〉</p>	<p>부 칙</p> <p>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